

서울시보

Hi Seoul
SOUL OF ASIA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2997호 2010. 09. 14.(화)



HAECHI
SEOUL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한강자전거도로 (군자교지역)

기관의 장		공 람								
선 람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731-6847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0-163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10-163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0-1639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3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5기 시정의 핵심의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본부·국 간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부서별 사무조정 등 기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실·본부·국 설치 사항을 반영함.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협력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을 폐지하여,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체제로 개편한 사항 반영

나. 실·본부·국 산하의 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함.

- 창업, 일자리, 환경오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창업소상공인과, 도시재생과, 교육격차해소과, 외국인생활지원과, 생활환경과, 일자리지원과’ 등을 신설하고,
-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가로환경개선담당관 등 사업이 일부 종료되거나, 타 부서와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통폐합하여 부서 간 소관업무를 조정하며,
- 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71-2151,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3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을 16,057명에서 16,056명으로 1명 감축하고, 본청·사업소간 정원 이관 등 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본청의 일반직 3급정원 1명을 감축함.
나. 실·본부·국간의 기능조정 및 재배치에 따라 본청·사업소간 정원을 이관하고, 행정수요변동을 반영하여 동일 직종 내에서 직급과 직렬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71-2151,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639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시행(2010.12.1.)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관할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시·도간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한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로 송부토록 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02-3707-8620, FAX : 02-731-6956, E-mail : tr05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